



수신 | 한국ESG학회 회원

경유 |

제목 | 2023년도 회비납부 및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안내

1. 관련근거 : 한국ESG학회 정관 제6조(권리와 의무), 제7조(퇴회와 자격정지), 제24조(재산), 제25조(재산의 구성), 제26조(재산의 관리) 및 한국ESG학회 회원관리규정 제4조(회원가입), 제5조(연회비), 제7조(회원의 퇴회와 자격정지)

2. 한국ESG학회는 회원님들께서 납부해 주시는 소중한 학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2023년도 학회비/기부금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리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첨부를 참조하시어 2023년도 학회비/기부금을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3. 정관 제6조 제3항에 따라 회비납부 실적은 차기 회장 및 감사의 선임을 위한 총회 개최 전까지 학회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회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붙임 : 1. 회비/기부금 내역 및 납부처 안내
2. 회원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
3. 한국ESG학회 회원관리 규정(정관) 끝

한국ESG학회 회장 고 문 현



총무이사 : 이진

회 장 : 고문현

우) 0697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, 숭실대학교 진리관 508호

T: 010-7703-3232 (이진 총무이사), 010-4263-7715 (고문현 회장) F:02-817-5837

Homeage : www.kesga.org / E-mail : sugrace@naver.com

< 붙임 1. >

[회비/기부금 내역 및 납부처 안내]

○ 회비내역(단위 : 만원)

구 분	가입 첫해 연회비	2년차부터 매년 연회비
정회원	10만원	5만원
준회원	5만원	2만원
특별회원	20만원	10만원

○ 임원회비내역(단위 : 만원)

구 분	가입 첫해 연회비	2년차부터 매년 연회비
고문, 명예회장	10만원	10만원
회장, 공동회장	300만원	150만원
차기회장	200만원	100만원
부회장 및 위원장	100만원	30만원
상임이사	50만원	20만원
이사	20만원	10만원
감사	30만원	20만원
연구위원	10만원	10만원

○ 기관(단체)회비내역(단위 : 만원)

구 분	매년 연회비
중소기업	200만원(부회장 및 회원 1명 포함)
중견기업	500만원(부회장 및 회원 5명 포함)
대기업	1,000만원(부회장 및 회원 10명 포함)
메이저 대기업	2,000만원(부회장 및 회원 20명 포함)
공공기관, 회계법인, 법무법인 등	500만원(부회장 및 회원 5명 포함)
메이저 공공기관, 회계법인, 법무법인 등	1,000만원(부회장 및 회원 10명 포함)
기초지방자치단체	300만원
특례시	1,000만원
광역지방자치단체	2,000만원(3,000만원: 메이저 서울, 경기)

※ 회원가입시 반드시 회원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. 양식이 필요하신 경우 사무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.

※ 기관회원의 경우 아래와 같은 특전이 있음을 안내합니다.

1.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ESG 경영이 실효성 있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지원한다.
 2. 학회와의 공동 학술연구 또는 세미나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, ESG 인증 또는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학회의 전문 역량을 동원한 최고 수준의 컨설팅 및 자문지원과 교육 등 관련 업무에 대하여 협력한다.
 3. 기관(단체)회원이 ESG에 관한 컨설팅 또는 자문 지원을 요청한 경우,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.
 4. 그 밖에 기관(단체)회원이 공신력 있는 학회와 협력 사업 등을 희망할 경우, 학회의 논의 등을 거쳐 해당 분야 업무에 대해 고품질의 지원·협력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② 기관(단체)회원의 요청이나 협의에 따라 별도의 프로젝트 등으로 추진하는 경우, 그와 관련하여 협의하거나 체결한 협정 등에 따른다.

○ 회비납부처

우리은행 1005-804-287641 한국ESG학회

* 회비를 납부하실 때에는 '받는 분 통장 표시내용'에 송금하시는 분의 성함과 내역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예: 홍길동홍보이사, 홍길동회원, 홍길동준회원, 홍길동 기관(단체)회원 등)

< 붙임 2. >

사단법인 한국ESG학회 회원 가입신청서

신청 구분	정회원 <input type="checkbox"/>	준회원 <input type="checkbox"/>
	단체회원 <input type="checkbox"/>	특별회원 <input type="checkbox"/>
성명	한글: 한자: 영문:	생년월일
학력		전공
자격		
직장	소속	
	직위	
	주소	
	전화번호	
연락처	주소	
	전화번호	
	E-Mail	
위와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		
년 월 일		
신청인:		(서명 또는 인)
추천인:		(서명 또는 인)
추천인:		(서명 또는 인)
사단법인 한국ESG학회 귀중		

사단법인 한국ESG학회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

사단법인 한국ESG학회는 회원명부 작성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명세

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생년월일, 직장정보(직장명, 부서, 직위, 주소, 전화번호) 자택주소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주소 학력사항, 전공, 자격	회원명부 작성, 법인등기·지정기부금단체 등록 등 사단법인으로서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 처리	한국ESG학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회 운영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? (예 / 아니오)

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명세

제공받는 자	제공 목적	제공 항목	보유 기간
법인등기,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등 학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과 이 업무와 관련하여 학회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	법인 등기와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등 사단법인으로서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 처리	성명, 생년월일, 직장정보, 자택주소	1년

※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회 운영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? (예 / 아니오)

년 월 일

본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사단법인 한국ESG학회 귀중

[참고]

사단법인 한국ESG학회의 정관 (회원 부분)

제5조(회원) ①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한다.

1. 정회원
2. 준회원
3. 기관(단체)회원
4. 특별회원

② 정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사람으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가 된다.

1. 대학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)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
2. 환경학·사회학·경영학·경제학·법학·행정학·생물학·생태학·지구과학·산림과학·해양학·공학·농업생명과학·의학 등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
3. 국회의원, 판사, 검사, 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
4.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
5. 환경학·사회학·경영학·경제학·법학·행정학·생물학·생태학·지구과학·산림과학·해양학·공학·농업생명과학·의학 등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자
6. 환경학·사회학·경영학·경제학·법학·행정학·생물학·생태학·지구과학·산림과학·해양학·공학·농업생명과학·의학 등과 관련된 법인, 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임원

③ 준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다음의 사람으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된다.

1. 대학원이나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환경학·사회학·경영학·경제학·법학·행정학·생물학·생태학·지구과학·산림과학·해양학·공학·농업생명과학·의학 등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
2. 환경대학원생·경영대학원생·법학전문대학원생·행정대학원생·공학대학원생·의학전문대학원생 등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 사람
3. 7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
4. 환경학·사회학·경영학·경제학·법학·행정학·생물학·생태학·지구과학·산림과학·해양학·공학·농업생명과학·의학 등과 관련된 분야의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

④ 제3항의 준회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정회원이 된다.

⑤ 기관(단체)회원은 국내외의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된다.

⑥ 특별회원의 자격은 이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